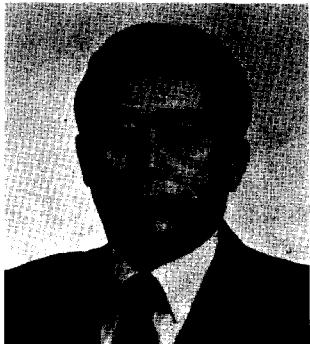


# 美國의 酒類管理制度



白 樂 昇

(大韓酒類工業協會·前會長)

## ■ 目 次 ■

- 第5章 California州 酒類管理法
  - California州 事業管理法 第9部  
  酒類事業 -
- CHAP 4 酒類의 輸入
- CHAP 5 免許發行上의 制限
  - 第1節 總 則
  - 第1.5節 條件付免許
  - 第2節 免許販賣場數의 制限
- CHAP 6 免許의 發行 및 移轉(讓渡)
  - 第1節 免許의 申請
  - 第2節 酒類販賣業 開業予定의 揭示
  - 第3節 免許申請의 拒絕 및 異議申立
  - 第4節 免許의 發行 및 更新
  - 第5節 免許의 移轉(讓渡)

## CHAP 4. 酒類의 輸入

### § 23660 (郵便에 의한 酒類의 輸送)

郵便當局은 州外를 原產地로 하는 酒類의 配送을 拒絕할 수 있다. 郵便當局은 配送을 拒絕한 酒類를 管理厅에 引渡할 수가 있다. 庁에 受領된 酒類는 州에 没收되는 것으로 한다.

### § 23661 (酒類의 荷受人 또는 荷受場所)

本條의 別段의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酒類는 免許輸入者의 事業場 또는 本法에 根據하여 免許되는 一般倉庫에 있어서의 免許輸入者 또는 通關取扱人을 荷受人 또는 荷受場所로 하는 경우에 限하여 一般運送業者에 의해 州内에서 引渡를 行하거나 使用하기 위해 州外로부터 州内에 搬入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本章의 規定은 州내의 免許權者로 부터 州내의 他의 免許權者에게 販賣되고 引渡되는 酒類로서 引渡의 過程에 있어 他의 州를 通過하고 當該 他의 州에 保管되는 일 없이 州外에서 引受된 것에 對해서는 適用되지 않는다.

本條의 規定은 個人 또는 家庭用으로 合衆國外로부터 成人에 의해 州内에 搬入되는 適正數量의 酒類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但 一般旅客車以外의 車輛에 의해 合衆國에 歸國하는 California州 居住者 또는 徒步로 入國하는 成人은 現行聯邦法에 根據하여 關稅의 非課稅限度內의 酒類搬入量에 制限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들 酒類는 州酒類免許上의 規制의 適用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本法의 規定은 合衆國의 國境外에서 勤務에 任하고 있는 合衆國軍隊의 成人隊員이 州内에서 個人 또는 家庭用에 使用하기 위해 聯邦關稅率法令에 따라 關稅를 非課稅로 인정하는 數量의 酒類를 合衆國外로부터 州内에 送付하는 경우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이러한 酒類는 一般輸送業者에 의

해서만 州内에 搬入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하고 免許輸入者의 事業場 또는 本法의 規定에 根基하여 免許되는 一般倉庫에 있어서의 免許輸入者 또는 通關取扱人을 荷受人 또는 荷受場所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本法의 他의 規定에 不拘하고 輸入者, 通關取扱人 또는 一般倉庫免許의 保有者는 本項의 規定에 따라 州内에 搬入되는 酒類를 充分한 身分證明을 받고 所有者에게 引渡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이 引渡는 州内에 있어서의 酒類의 販賣로는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蒸溜酒의 製造者는 다음의 경우 製造者の 所有 또는 貸借로 그의 職員이 運行하는 自動車에 의해 州内에 蒸溜酒를 輸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a) 蒸溜酒가 合衆國內의 製造地로부터 州内에 輸送되어지는 것.
- (b) 製造者가 California蒸溜酒 製造者免許를 保有하고 있을 것.
- (c) 酒類의 引渡가 當該製造者の 免許事業場에 對해 行하여 지는 것.

#### § 23661. 1 (美國大陸上의 航空便의 乘客)

他의 法律의 規定에 不拘하고 美國大陸을 發着地로 하고 美國大陸外에 着陸하지 않는 事業者特許를 받은 航空便의 成人乘客은 個人 또는 家庭用에 使用하기 위해 1 쿼트以下의 酒類를 州内에 搬入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搬入酒類는 州의 酒類免許規制의 適用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어느 누구도 本條에 따라 1暦年中에 1 쿼트를 超過하는 酒類를 州内에 搬入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661. 2 (他州로부터의 와인貨物의 受取)

他의 法律의 規定에 不拘하고 免許를 받지 않은 成人은 버무스 및 샴페인을 包含하는 와인貨物을 他의 州로부터 送付를 받아 이를 受取하기 위한 許可를 管理厅에 申請하여 許可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와인貨物의 送付 및 受取는 庁이 定하는 規則에 따라 行하여지는 것으로 하며 1暦月中의 許可總量은 2.4 갤론을 超過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와인貨物受取許可證의 提示를 받은 輸送業者는 許可證에 氏名이 記載되는 者에게 와인貨物을 引渡하는 것을 認定받는다. 許可에 根據하는 와인貨物의 引渡는 州内에 있어서의 酒類의 販賣로 간주하지 않는다.

#### § 23661. 5 (麥酒 또는 와인의 州外로부터의 輸送)

合衆國內의 California州外에서 合衆國法令에 따라 麥酒 또는 와인을 製造 또는 生產하고 있는 者는 다음의 경우 當該製造者 또는 生產者에 의해 所有되고 運行되고 있는 車輛에 의해 또는 30日以上의 貸借契約에 따라 이들의 者 혹은 契約輸送業者에 의해 運行되는 車輛에 의해 本法에 根基하여 州内에 麥酒 또는 와인을 輸入하는 것을 認定받는 免許權者에게 引渡를 行하기 위해 麥酒 또는 와인을 州内에 輸送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a) 麥酒 또는 와인의 引渡가 輸入免許權者的 事業場에 있어서 行하여지거나 本法에 따라 免許된 一般倉庫내의 輸入免許權者 또는 通關取扱人 免許權者에 對해 行하여질 것.

(b) 麥酒製造者 또는 와인生産者가 歲入 및 課稅에 關하는 法律 第32110條에 根基하는 製造酒類州際輸送許可를 保有하고 있을 것.

#### § 23661. 6 (輸出向와인의 返還)

營業上 州内로부터 他州에 와인을 輸出하고 있는 免許 와인釀造者は 自己가 所有하고 運行하는 私用車輛에 의해 輸出에 發送된 와인의 全部 또는 一部를 州내의 自己의 免許事業場에 返還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返還되는 와인은 歲入 및 課稅에 關하는 法律 第32175條의

規定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 23661.7 (州外購入者에 의한 와인의返品)

免許 와인釀造者로부터 와인을 購入하여 州外에서 引渡 또는 使用하기 위하여 州内에서 引渡를 받고 州外에 와인을 移送한 者는 와인을 購入한 州내의 와인釀造者에 對해 當該 와인의 全部 또는一部를返品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이返品을 行하기 위해 購入者は 州内에 있어서 特別히 免許를 取得할 必要는 없는 것으로 하며 自己의 所有 또는 運行하는 車輛에 의해 와인을返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歲入 및 課稅에 關한 法律 第32175條의 規定은返品된 와인에 適用하는 것으로 한다.

#### § 23662 (免許輸入者로의 荷受人の變更)

荷送時に 있어 當初免許를 받지 않은 者를 荷受人으로 하고 있었으나 引渡가 行해지기 前에 輸送業者の 손을 떠나는 일없이 輸送中에 荷送人 또는 荷受人에 의해 輸送業者로부터 最終적으로 引渡를 받는 荷受人이 免許輸入者로 變更되는 경우에는 當該酒類의 送付는 免許輸入者를 荷受人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 23663 (州内에 있어서의 引渡의 推定)

州内の 地를 送付先으로 하는 酒類는 州内에 있어서 引渡되고 또는 使用되는 것으로 推定한다.

#### § 23664 (州際 또는 國際列車等에 있어서 販賣되는 酒類)

州外 또는 國外의 乘客을 輸送하고 있는 鉄道, 寢台車, 食堂車, 船舶 또는 海運會社 혹은 航空會社는 乘客 또는 勤務外의 職員에게만 販賣할 目的으로 銀道, 車輛, 船舶 또는 航空機에 의해 州内에 搬入되는 酒類에 關해 또는 通常의 運行過程에 있어서 州外에 持出되는

酒類에 關해 輸入者로는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輸入者免許의 規制의 適用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666 (違法輸入酒類의 差押)

第23661條부터 第23664條까지의 規定에 反하여 州内에 輸入되는 酒類는 全部 管理庁의 差押을 받는 것으로 한다.

#### § 23667 (荷受人인 輸入免許權者の 受領書)

州内에서 引渡하거나 또는 使用하기 위한 酒類를 州内에 輸送하는 一般運送業者 또는 當該輸送된 酒類의 引渡를 行하는 一般運送業者는 免許輸入者 또는 通關取扱人으로부터 當該酒類에 關하여 管理庁이 定하는 樣式의 受領書를 받는 것으로 한다. 酒類의 荷受人이 運送業者에 對해 受領書를 交付하고 免許를 提示하는 것을 拒絕할 때는 運送業者는 酒類의 引渡에 關하는 모든 責任에서 免除된다.

#### § 23668 (酒類荷受人에 의한 受領書 交付의 拒絕)

酒類荷受人이 免許輸入者 또는 通關取扱人이 아닐 경우(第23662條의 適用을 받을 경우를 例外함) 또는 荷受人이 受領書를 交付하고 免許를 提示하는 것을 拒絕하는 경우에는 運輸業者는, 直時貨物의 内容, 原產地, 輸送先 및 荷送人 그리고 荷受人의 住所에 關한 事項을 밟혀 Sanfransisco管理庁事務所에 通知하는 것으로 한다. 10日 以内에 當該酒類는 管理庁에 引渡되고 州에 没收되는 것으로 한다.

#### § 23669 (運送業者の 未收運送料等)

第23666條에 根據하는 差押 또는 第23668條에 根據하여 没收되는 酒類가 管理庁의 指示에 의해 또는 指示에 根據하여 賣却되는 경우에는 酒類의 輸送에 關해 發生한 未收의 運送

料 및 倉庫保管料는 酒類의 賣却費用 및 酒類에 關하여 發生하는 稅額을 控除한 後의 賣上金額에 의해 支拂을 받는 것으로 한다.

#### § 23670 (違反行爲에 對한 罰則)

本節의 規定에 違反하는 者는 輕罪로 한다.

#### § 23671 (州外麥酒의 販賣者)

州内에 向하여 麥酒를 出荷하는 州外麥酒의 販賣者가 管理厅이 發行하는 承諾證明書를 保有하고 있을 경우를 除外하고 麥酒輸入者는 州内에 있어서의 販賣를 위해 州内에서 製造되지 않은 麥酒를 購入하여 州内에 輸送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承諾證明書는 州外麥酒의 販賣者가 매달의 10日前에 庁이 定하는 樣式에 따라 前月中 州内의 各免許麥酒輸入者에게 出荷한 麥酒의 數量을 表示하는 報告書를 提出하는 趣旨를 庁과의 사이에 있어 文書에 의해 合意하는 경우에 付與되는 것으로 한다. 州外麥酒의 販賣者가 證明書의 交付를 받은 後 報告書의 提出을 行하지 않을 경우는 免許의停止 또는 取消를 위해 設定되어 있는 方法에 의해 Sanfransisco市 또는 庁이 證明書의 保有者에게 便宜하다고 判斷하는 州내의 其他の 郡廳所在地에 있어서 開催되는 聽聞을 經由한 後에 證明書의 効力を 停止 또는 取消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承諾證明書에 대해 手數料는 徵收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承諾證明書의 効力은 庁에 의해 取消될때까지 繼續하는 것으로 한다.

#### § 23672 (公認輸入者)

免許輸入者는 브랜드所有者 또는 權限을 付與받은 代理人에 의해 當該브랜드製品의 公認輸入者로서 指定되는 경우를 除外하고 蒸溜酒의 브랜드製品를 購入 또는 그의 引渡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免許輸入者에 의해

California에 輸入되는 蒸溜酒는 小賣免許權者에게 販賣하고, 引渡를 行하기 前에 免許輸入者의 倉庫 또는 同人을 위한 公認倉庫에 保管되는 것으로 한다.

#### § 23673 (蒸溜酒의 都賣販賣價格)

蒸溜酒 브랜드의 所有者 또는 그의 代理人은 1曆月에 있어 他의 州 또는 콜롬비아 特別區의 都賣人 또는 精溜者 혹은 蒸溜酒 小賣 販賣店을 所有 또는 運營하고 있는 州 또는 州機關에의 當該브랜드製品의 最低販賣價格 보다도 높은 價格으로 州내의 都賣人 또는 精溜者에게 蒸溜酒의 브랜드製품을 販賣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他의 州 또는 콜롬비아 特別區에 있어 혹은 蒸溜酒 小賣店을 所有 또는 運營하고 있는 州 또는 州機關에 對해 販賣되고 있는 蒸溜酒 브랜드製品의 最低價格을 決定하는데 있어 모든 值引額 리베이트, 割引 및 他의 州 또는 콜롬비아 特別區에 있어 蒸溜酒 브랜드製품을 購入하는 都賣人 또는 州 혹은 州機關, 그리고 蒸溜酒 小賣店은 所有 또는 運營하는 州 또는 州機關에 對해 提供되는 其他의 販賣促進支出을反映시키기 위해 販賣價格의 減額을 行하는 것으로 한다. 但 本條는 蒸溜酒에 對한 州稅 및 免許手數料 그리고 配送費上의 相違에 對한 適正한 販賣價格差를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本條에 規定하는 蒸溜酒에 대한 州稅 및 免許手數料는 他의 州 또는 콜롬비아 特別區에서 課稅되고 있는 蒸溜酒에 對한 稅 및 이들에 있어 徵收되는 免許手數料를 말한다.

本條의 違反行爲는 違反行爲에 의해 損害를 보고 있는 者가 提起하는 브랜드所有者 또는 그의 代理人의 違反行爲의 繼續을 禁止하는 것을請求하는 民事損害賠償訴訟에 의해서만 是正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民事損害賠償訴訟에 있어 免許權者가 敗訴했을 경우 同判決

은 本條 第 7 章에 따라 違反免許權者의 免許停止 또는 取消의 事由로 간주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의 適用上 蒸溜酒란 California에서 生產되는 브랜디를 包含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California 브랜디製造者 또는 그의 代理人은 California 브랜디에 關해 本條에 根基하는 宣誓供述書를 提供하는 것을 義務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CHAP 5. 免許發行上의 制限

### 第 1 節 總 則

#### § 23770 (와인釀造者 또는 와인브랜디 免許의 發行上의 制限)

와인釀造者 免許 또는 와인브랜디 免許 (免許事業場에서 行하는 營業에 適合한 免許中 한 가지의 免許)는 合衆國內國歲入法上 保稅場으로 되는 와인釀造所 또는 와인貯藏所를 營業하는 資格을 保有하고 있는 者 또는 現在 이들의 營業을 行하고 있는 者에 對해서만 發行되고 이들의 者에 의해 保有되는 것으로 한다. 合衆國內國歲入法上 保稅場으로 되는 와인釀造所 또는 와인貯藏所를 營業하고 있는 者 또는 合衆國內國歲入法에 根基하여 이들의 營業을 認定받는 者는 免許事業場에 있어서 行하는 營業에 適合한 와인釀造者 免許 또는 와인브랜디 免許中 한 가지의 免許를 申請하는 것으로 하고 保有하는 것으로 한다.

#### § 23771 (蒸溜酒製造者 免許 및 同代理人 免許의 發行上의 制限)

蒸溜酒製造者 免許 또는 蒸溜酒製造者 代理人 免許 以外의 蒸溜酒免許는 州内 또는 州外에서 蒸溜酒의 製造를 行하고 있는 者에 對해 혹은 그 任員, 代表理事, 職員 또는 代理人에

對해서 發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772 (同上)

蒸溜酒 製造者 또는 同代理人 免許는 蒸溜酒都賣人, 精溜者 또는 小賣人 免許에 關해 免許權의 取得 후에 株式所有 代表理事兼任 信託契約 貸付 抵當權 또는 動產 不動產에 對한 先取特權 其他에 의해 直接 또는 間接의 으로 權利를 保有하는 者에 의해 所有되어서는 안된다.

本條의 規定은 製造者, 製造者代理人, 精溜者, 瓶入者, 輸入者 또는 都賣人 혹은 이들의 者의 任員 代表理事 또는 代理人과 다음에 列舉하는 免許의 하나만을 保有하는 者와의 사이의 金融關係 또는 代理關係에는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a) 貞正한 클럽에 對한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

(b) 클럽免許 (本法 第 3 章 第 4 節에 根據하여 發行되는 免許).

(c) 退役軍人를 亂免許 (本法 第 3 章 第 5 節에 根據하여 發行되는 免許).

(d) 船舶, 鐵道, 寢台車輛 또는 航空機에 對한 店內消費酒類 販賣免許 但 製造者 同代理人 精溜者, 瓶入者, 輸入者 또는 都賣人 혹은 이들의 者의 任員 代表理事 또는 代理人의 製造 또는 販賣하는 酒類가 販賣免許權者에게 直接 또는 間接의 으로 販賣 提供 또는 供與되지 않는 경우에 限한다.

#### § 23773 (州外蒸溜酒 製造者の 代理人에 의한 購入勸誘行為)

第23771條 및 第23772條의 規定은 州外에 있는 蒸溜酒製造者的 代理人 또는 그의 職員이 當州內에 있어서 蒸溜酒購入의 行為를 行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 23774 (雜貨都賣業者에 對한 蒸溜酒都賣免許의 發行)**

第23771條 및 第23772條의 規定은 1937年 7月 1日의 直前 5年間 州內에 있어서 物品, 製品 및 雜貨를 小賣業者에게 販賣하기 위한 都賣配送施設을 經營해 왔던 事業으로서 直前 5年間의 主된 取扱商品이 酒類以外의 物品 및 雜貨였던 것을 同日現在 所有 또는 經營하고 있는 者에게 蒸溜酒의 都賣人免許를 發行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 23775 (輸入者免許의 發行上의 制限)**

輸入者免許는 輸入者免許에 記載 되는 酒類의 再販賣를 위한 販賣를 認定하는 免許를 保有하는 者에게 發行되는 것으로 한다.

**§ 23776 (都賣人免許의 發行上의 制限)**

都賣人免許는 人口 1萬 5千人 以下의 郡에 있어서 發行되는 경우를 除外하고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權者에 對해 發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23777 (人口 5萬 以上의 市의 蒸溜酒都賣人)**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는 1940年의 聯邦人口調查上 5万人 以上的 人口를 保有하는 市에 事業場을 갖는 蒸溜酒都賣人 또는 5萬 以上的 人口를 保有하는 市에 事業場을 갖는 免許權者에게 蒸溜酒를 販賣하고 있는 蒸溜酒都賣人에게 發行하거나 또는 이를 更新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23778 (蒸溜酒都賣人の 在庫保有義務)**

蒸溜酒都賣人免許는 免許를 付與받은 年間을 通해 恒常 自己의 都賣事業場에 있어서 代金支拂畢의 管理庁이 定하는 適正數量의 蒸溜酒在庫를 保有하지 않는 경우에는 免許를 保有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23779 (都賣免許의 發行上의 制限)**

都賣免許는 免許에서 指定 되는 酒類를 小賣免許權者에게 販賣하는데 있어 真正한 都賣業을 現實의 으로 誠實하게 行하지 않거나 또는 行할 意思가 없는 者에게 發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管理庈은 免許權者가 45日間 現實의 그리고 誠實하게 都賣業에 從事하지 않을 때에는 都賣免許를 取消할 수가 있다. 또한 第23378條 第23379條 第23776條 第23777條 및 第23778條 規定을 遵守하지 않는 者가 保有하는 都賣免許는 取消하는 것으로 한다. 都賣免許權者에 의한 自己의 小賣免許權者 勘定에 의 販賣行為는 真正한 都賣業上의 去來로는 解釋되지 않는다.

**§ 23780 (蒸溜酒都賣人免許의 前受金取得者에 對한 發行制限)**

蒸溜酒都賣人免許 또는 精溜者免許는 小賣人에의 蒸溜酒의 將來引渡時에 있어서 그의 一部 또는 全額을 支拂代金에 充當하기 위해 使用할 目的으로 小賣人으로부터 取得하는 預託金을 受取하고 있는 者에 對해 發行하거나 또는 이를 更新해서는 안된다.

**§ 23784 (店內消費酒類小賣 販賣免許의 發行上의 制限)**

店內消費酒類小賣 販賣免許는 製造者, 와인釀造者, 輸入者 또는 精溜者免許가 發行되고 있는 者, 혹은 事業場에 對해 發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製造者 와인釀造者 輸入者 또는 精溜者免許는 店內消費酒類小賣 販賣免許가 發行되고 있는 者 또는 事業場에 對해 發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但, 人口 1萬 5千人 以下의 郡에 있는 都賣人에게 店內消費酒類 販賣免許의 發行을 할 수 있는 것을 除外한다.

**§ 23785 (店外消費全酒類 小賣販賣 免許의 發行上의 制限)**

店外消費全酒類 小賣販賣免許가 精溜者 또는 蒸溜酒 都賣人免許의 保有者에게 發行되는 경우에는 本法上 別段의 規定이 있을 경우 또는 別段의 取扱을 認定받고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精溜者 또는 蒸溜酒 都賣人 免許가 發行 되고 있는 事業場과 同一한 事業場에 對해서만 發行하는 것으로 한다.

**§ 23787 (眞正公開食堂에 對한 免許의 發行上의 制限)**

管理府은 真正한 公開食堂내에 있어서 消費 및 其他의 處分을 하는 酒類를 販賣하기 위한 店內消費酒類 販賣免許를 發行하기 前에 公開食堂이 事業場내에서의 食事의 販賣 및 公衆에 의한 消費를 위해 誠實하게 設備되고 維持되느냐 그렇지 못한가에 對해 判定을 行하는 것으로 한다. 75室 以上의 호텔 또는 모텔 12레인 以上의 볼링場 또는 其他의 公開食堂으로서 販賣免許를 付與받고 公開食堂으로서 誠實하게 設備되고 維持되고 있는 것은 第23038條에 根基하여 義務지워지고 있는 食事의 販賣 및 提供業務를 聽에 通知하고 下請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但, 免許權者는 免許事業場에 있어서 下請入에 의해 發生되었거나 또는 默認된 違法行爲에 對해 責任을 負擔하는 것으로 한다. 免許權者는 免許保有의 資格을 갖지 않은 者에게 業務를 下請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本條의 規定은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를 施設내에 있어서의 一般會員에 對한 食事의 販賣 또는 이들의 者에 의한 食事의 消費를 위해 誠實하게 設備되고 維持되고 있는 施設에 對해 發行, 更新 또는 讓渡하는 것을 施設의 運營이 事前에 予定된 社會的 또는 事業上의 이벤트에 있어서 食事 및 食料를 提供하는 것에 限하고 會場에의 入場이 티켓을 持參하는 者에게

만 認定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 23788. 5 (店內消費酒類 販賣免許權者的 支配人資格)**

店內消費酒類販賣 免許權者는 同免許를 保有할 資格을 갖지 않는 者를 그려하다는 것을 認知하고 있으면서 事業의 支配人 管理者 또는 運營擔當者로 採用해서는 안된다. 予定하는 支配人等의 資格의 認定을 管理府에 申請하는 店內消費酒類販賣 免許權者는 그의 申請時에 100弗의 手數料를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手數料는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編入되는 것으로 한다.

**§ 23789 (教會 및 病院의 近接地에 對한 店內消費酒類 販賣免許發行의 禁止)**

管理府은 教會 및 病院에 直接近接한 場所에 있는 事業場에 對해 免許의 更新 또는 讓渡의 경우를 除外하고 店內消費酒類 販賣免許를 發行하는 것을 拒絕하는 것을 特別히 認定 받는 것으로 한다. 또한 管理府은 免許의 更新 또는 讓渡의 경우를 除外하고 學校 또는 公共 그라운드로부터 600feet 내에 있는 事業場에 對해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를 發行하는 것을 拒絕하는 것을 特別히 認定 받는 것으로 한다.

**§ 23790 (特別地區條例)**

店內消費 酒類販賣免許는 免許에 의해 주어지는 權利의 行使가 郡 또는 市가 定하는 有効한 特別地區條例에 反하는 場所에 存在하는 事業場에 對해 發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特別地區條例의 効力發生前에 店內消費 酒類販賣免許에 의해 주어지는 權利의 行使에 使用되고 있었던 事業場은 다음의 條件下에서 營業을 繼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a) 事業場에 免許分類上 小賣酒類販賣 免許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는 免許의 更新, 移轉 또는 讓渡 혹은 第23821條에 의해 認定되는 경우를 除外하고 同免許가 發行되고 있는 全販賣場數가 郡人口의 各 2500人에 1場의 比率을 超過하고 있는 郡에 있어서는 (끝 數는 1場으로 切上한다.) 追加 發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818 (人口統計)

第23816條 및 第23817條의 適用上 人口는 10年마다 또는 特別히 實施되는 合衆國 人口統計 혹은 그後 實施되는 財務省 人口研究所가 公認하는 統計에 根基하여 確定되는 것으로 한다.

#### § 23819 (人口比率에 根基하는 免許의 發行 또는 取消의 不用)

本節의 規定은 本節에 있어서 設定되는 人口比率에 의해 認定되는 數를 超過하는 郡에 存在하는 免許의 取消를 認定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郡內의 免許件數가 人口比率에 의해 認定되는 數에 達하고 있지 않은 것을 理由로 當該 郡内에 있어서 免許의 發行을 義務지우는 것은 아니다.

#### § 23820 (管理廳에 의한 免許發行件數 制限規則의 作成)

管理廳은 州憲法 第20條 第22項 또는 本法의 規定에 合致하고 本節의 諸規定을 實施하기 위해 季節免許를 包含하여 麥酒免許, 店外消費麥酒 및 와인販賣免許, 麥酒 및 와인都賣人免許 그리고 와인讓造者 免許를 包含하지 않는 各酒類免許의 郡内에 있어서의 發行數를 公共의 福祉 및 道德, 住民의 便宜 또는 必要性의 觀點에서 麵이 決定하는 數를 制限하기 위해 必要한 모든 規則을 作成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 23821 (人口增加)

特定의 郡에 있어서의 人口가 10年마다 또는 特別하게 實施되는 最新의 合衆國 人口統計以來 2000人 또는 2000人的 倍數 以上으로 增加한 것이 充分한 證據에 의해 管理廳에 明白히 밝혀졌을 경우로서 當該 郡에 있어서의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總數가 第23816條에서 規定하는 最高限度數를 超過하지 않을 때는 管理廳은 第24070條의 制限下에서 郡人口의 增加數 各 2000人에 1件의 比率을 넘지 않는範圍에서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를 發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特定의 郡에 있어서의 人口가 10年마다 또는 特別하게 實施되는 最新의 合衆國 人口統計 以來 2500人 또는 2500人的 倍數 以上으로 增加한 것이 充分한 證據에 의해 管理廳에 明白하게 밝혀지고 人口 增加 때문에 當該 郡의 住民이 不正하게 그리고 不公正하게 差別받고 있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로서 當該 郡에 있어서의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總數가 第23817條에서 規定하는 最高限度數를 超過하고 있지 않을 때는 管理廳은 第24070條의 制限下에서 郡人口의 增加數 各 2500人에 1件의 比率을 넘지 않는範圍에서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를 發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店內 또는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新規原免許 혹은 同免許의 他郡에의 移轉의 申請을 受理하는 경우에 當前에 管理廳은 行政法 第6061條의 規定에 따라서 店內 또는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新規原免許를 發行하고 혹은 同免許의 移轉을 받아들일 수 있는 郡에 있어서 日時 方法 및 受付場을 明示하고 免許發行 또는 移轉申請을 受理한다는 趣旨의 公示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以上에 規定하는 場數制限은 他의 모든 側面에 있어서 効力を 繼續하는 것으로 한다.

### § 23824 (州, 市等이 所有하는 施設)

第23816條에서 規定하는 免許販賣場數에 對한 制限은 California州 公共法人化된 市,, 郡, 市 및 郡, 空港特別地區 또는 其他의 地區 혹은 California州의 公社가 所有하는 施設 혹은 郡에 貸與되고 있는 施設이 真正한 公開食堂으로서 運營되고 있는 限 이들 施設에 適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但, 公共法人化된 市,郡, 市 및 郡 또는 其他의 地區에 의해 所有되고 있는 公會堂 또는 公會堂으로 使用하기 위해 郡 또는 市에 貸與되고 있는 施設로서 直接公法人에 의해 運營되고 있는 것은 第23816條에서 規定하는 制限에 따르는 것으로 하지만 真正한 公開食堂으로서 運營하는 것을 義務지워지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公會堂은 第23793條의 適用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州, 公共法人化된 市, 郡, 市 및 郡 空港特別地區 또는 其他의 地區 혹은 California州의 公社에 의해 所有되고 있는 施設에 對해 發行되는 免許 혹은 郡 또는 市에 貸與되고 있는 施設에 對해 發行되는 免許는 第24048. 1條 또는 第24048. 3條의 規定에 따라서 更新되는 것으로 한다. 이들의 免許는 本節에서 規定하는 制限數의 適用을 決定하는 경우에 使用하는 販賣場數로부터 排除하는 것으로 한다. 이들의 免許는 第23954. 5條의 適用을 받는 것으로 하며 同一施設에 對한 人的免許移轉(讓渡)만을 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들의 免許가 發行되는 경우 事前에 이들 施設을 所有하거나 또는 借用하고 있는 政府機關은 免許가 發行되어야 할 要請書 및 免許發行이 公益에 合致한다는 趣旨의 說明書를 管理廳에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公會堂으로서 使用되며 直接公法人에 의해 運營되는 施設을 所有하는 政府機關 또는 이들 施設을 借用하고 있는 郡에 의한 이들 施設에 對해서는 免許가 發行되어야 할 趣旨의 廳에 提出되는 要請

書는 免許發行이 公益에 合致한다는 趣旨의 說明書를 必要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975~1976年 通常 議會의 會期에 있어서 本條에 關해 行해지는 改正에 根據하여 徵收되는 手數料收入은 州財務省一般資金에 編入되는 것으로 한다.

### § 23825 (店内消費全酒類 販賣免許와 同特別免許間의 交換)

本節에 있어서 使用되는 것과 같이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에는 同免許의 特別免許가 包含되는 것으로 한다. 但, 第23816條의 場數制限規定은 同免許와 同免許의 特別免許間의 交換을 禁止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한다.

### § 23826 (人口 2500人 未滿의 郡에 對한 免許의 追加)

本章의 他의 規定에 不拘하고 人口가 2500人 未滿의 郡에 있어서 매년의 7月 1日에 店內 또는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件數가 어느 것이든 1件 以下의 경우에는 管理廳은 1年 以内에 店內 및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를 각각 1件 發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서 規定하는 免許를 發行하는데 있어 管理廳은 第23961條에서 提示하는 手續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여 發行되는 免許는 他의 郡에 移轉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3826. 5 (格付 第58級의 郡에 對한 免許의 追加)

本章의 他의 規定에 不拘하고 管理廳은 格付 第58級의 郡에 對해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原免許를 3件 追加的으로 發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서 規定하는 免許를 發行하는데 있어 管理廳은 第23961條에서 提示하는 手續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





### § 23954. 5 (店内 및 店外消費酒類 販賣免許의 原免許手數料)

店内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原免許의 申請者는 申請書 提出에 添付하여 6000弗을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이 秀節的 事業을 위한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原免許의 申請者는 4500弗을 店內消費麥酒 및 와인販賣免許의 申請者는 300弗을 店內消費麥酒 販賣免許의 原免許申請者는 200弗을 店外消費麥酒 및 와인販賣免許의 原免許의 申請者는 50弗을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原免許의 申請者는 6000弗을 申請書에 添付해서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原免許에는 免許의 更新 讓渡 또는 移轉에 의해 發行되는 免許는 包含되지 않는다.

本條에서 規定하는 免許手數料의 收納金은 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直接編入되는 것으로 한다.

### § 23954. 6 (店内消費全酒類 販賣特別免許의 原免許)

第23954. 5條에 있어서 使用되는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原免許란 同特別免許의 原免許를 包含하는 것이다. 第23954. 5條에서 規定하는 手數料는 이들 免許間의 交換에 關해 徵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954. 7 (接岸時酒類 販賣免許의 原免許의 手數料)

1万排水톤을 超過하는 船舶에 對한 接岸時酒類販賣免許의 原免許의 申請者는 申請書의 提出에 添付하여 2000弗을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當該 免許의 更新 讓渡 또는 移轉의 경우에는 手數料는 徵收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955 (와인讓造者의 免許手數料)

와인讓造者 免許의 申請者는 免許 申請書의 提出��에 申請者에 의해 生產되는 와인 數量

의 合理的推計에 根據하여 計算되는 免許手數料를 申請書의 提出에 添付하여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 § 23956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免許手數料)

와인讓造者 免許의 申請은 免許申請書의 提出時에 申請者에 의해 生產되는 와인 數量의 合理的推計에 根據하여 計算되는 免許 hand數料를 申請書에 添付하여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 § 23956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免許手數料)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申請者는 免許申請書의 提出時에 納付를 義務지워지고 있는 最低額의 免許手數料 또는 이를 超過하는 免許權者가 選擇하는 額의 手數料를 申請書의 提出時에 添付하여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 § 23957 (建設中의 事業場에 對한 免許申請書의 添付資料)

建設을 予定하고 있거나 또는 建設中에 있는 事業場에 對해 酒類小賣 販賣免許를 申請하는 申請書에는 本節에 의해 添付를 義務지워지고 있는 資料 및 予定된 事業場이 免許要件을 充足하느냐 아니냐를 判定하는데 參考로 하기 위해 管理廳이 要求할 수가 있는 其他의 資料를 添付하는 것으로 한다.

### § 23958 (免許資格要件의 調查 및 免許申請의 拒絕)

免許發行 讓渡 또는 移轉의 申請書 및 免許手數料를 受理 또는 收納했을 경우 管理廳은 申請者 또는 事業場이 免許資格要件을 充足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判定하기 위해 完全한 調査를 實施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廳은 本法의 規定이 遵守되어 왔었는가 아닌가를 判定하고

公共의 福祉 및 道德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事項을 調査하는 것으로 한다. 廳은 申請者 또는 事業場이 本法이 定하는 免許資格要件을 充足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免許의 發行 讓渡 또는 移轉의 申請을 拒絕하는 것으로 한다.

廳은 또한 免許를 發行하는 것이 法執行上의 問題를 야기시킬 可能性이 있을 경우 또는 免許의 發行이 免許의 特定地에의 過渡한 集中 혹은 過渡集中을 激化시키게 되는 경우 및 申請者가 免許의 發行이 公共의 便宜에 이바지하고 公共의 必要性을 充足한다는 것을 明白하게 밝힐 수가 없을 경우에는 免許申請을 拒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本條는 1984年 1月 1日부터 効力を 發生하는 것으로 한다.

#### § 23958. 1 (人的資格要件調査의 省略)

第23958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管理廳은 麥酒 및 와인都賣人 免許의 追加發行을 申請하는 麥酒 및 와인都賣人의 人的資格要件의 調査를 義務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958. 2 (파트나間의 免許의 讓渡)

第23958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管理廳은 免許가 同一파트나집의 파트나間에서 讓渡되고 새로운 파트나에게 免許가 주어지는 경우가 아닐때는 現在免許를 받고 있는 人的要件 또는 事業場을 調査하는 것을 義務지우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3960 (免許手數料의 一部還付)

免許申請書의 提出後 免許의 申請이 行해진 四半期內에 發行되지 않고 그後에 發行되는 경우는 當該 四半期에 對해서 納付를 義務지워지지 않는 免許手數料의 一部는 免許가 發行될 때에 歲入 및 課稅에 關한 法律 第2部 파트 14 또는 賣上稅法에 根據하여 課稅되는 稅의 申請者의 未納稅額에 充當하고 그 나머지

額은 申請者에게 還付하는 것으로 한다.

#### § 23961 (申請書審査順位決定을 위한 抽選)

(a) 어떠한 郡에 있어서의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 또는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發行 또는 移轉을 위한 申請書提出을 위해 第23821條 및 第24070條에 根基하여 行해지는 申請書受理의 公示에 記載하는 申請書提出期間의 終了時에 있어서 第23821條 및 第24070條에 根基하여 發行 또는 移轉되는 免許數 以上의 免許申請이 있다는 것을 管理廳이 認定했을 경우는 廳은 申請書提出期間의 終了後 60日 以内에 申請書를 審査하기 위하여 順位를 決定하기 위한 抽選을 實施하는 것으로 한다. 어떠한 郡에 있어서 1年間에 實施되는 抽選은 1회로 하며 種類의 免許의 發行 또는 移轉의 申請에 關해 各郡에 있어 1回의 抽選에 參加하는 權利를 부여받는 것으로 한다. 抽選者가 뽑는 番號는 申請書의 審査順位를 表示하는 것이지 免許發行의 順位를 保證하는 것은 아니다.

(b) 本條 (a)에 規定한 抽選이 行해지지 않는 경우 郡에 있어서의 店內 및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原免許의 發行 또는 郡에의 이들 免許의 移轉의 申告는 本法上의 他의 規定에 따라 行해지고 審査되는 것으로 한다.

(c) 申請者가 抽選前 적어도 90日間 California州의 住民이 아닌 경우에는 抽選에 參加하는 資格을 認定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抽選에 의해 審査되는 免許의 發行이 行해지기 전에 申請者는 90日間 居住하고 있다는 内容의 證據資料를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California州以外의 其他의 州에서 設立된 株式會社라 할지라도 國務省에 登記되고 90日間 California州에서 營業을 行하고 있는 株式會社는 本法의 適用上 居住要件을 充足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d) 廳은 本條에 根基하여 實施되는 抽選에





申立은 取下日로부터 1年間 當該 事業場에 關해 申請되는 免許申請에 對해 効力を 維持하는 것으로 한다.

#### § 24014 (異議申立의 確認行爲)

管理廳의 職員 또는 其他의 公務員 以外 의者에 의한 異議申立은 確認行爲를 받는 것으로 한다. 確認行爲는 情報 및 確信 事實에 根據하여 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 § 24015 (異議申立て 對한 聽聞)

他의 法律의 規定에 不拘하고 酒類 販賣를 行하기 위한 免許發行에 對해 第24013條에서부터 第24016條에 根基하는 異議申立て이 行해지는 경우 州行政聽聞局에 의해 異議申立書가 受理된 날로부터 60日 以内에 聽聞이 行해지는 것으로 한다.

#### § 24016 (行政手續)

本節에 根基하는 手續은 行政法 第2卷 파트1 第5章에 따라 実施하는 것으로 하고 管理廳은 同法上의 모든 權限을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第4節 免許의 發行 및 更新

#### § 24040 (特定의 者 및 場所에 對한 免許의 發行)

免許는 特定의 者에 對해 發行하는 것으로 하고 列車 또는 船舶內에 있어서의 酒類의 販賣 혹은 航空機内에서의 酒類의 提供을 認定하는 免許의 경우를 除外하고 特定地에 對하여 發行하는 것으로 한다. 그의 主된 所在地는 免許上에 記載하는 것으로 한다. 第24044條에서 規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特定地에 對해서 發行하는 免許는 免許의 發行日로부터 30日 以内에 使用을 開始해야만 하는 것으로 한다.

#### § 24041 (各 事業場에 對한 個別免許의 發行)

第23388條, 第23389條 및 第23390條에 規定하는 경우 그리고 一般倉庫 免許의 경우(州內에 있어서 1을 넘는 一般倉庫를 保有하고 또는 營業하고 있는 一般倉庫免許의 保有者는 모든 倉庫施設에 對해 1件의 免許만을 取得하는 것을 義務지워진다)를 除外하고 1을 超過하는 場所에 있어서 營業되는 事業의 各 事業場에 對해 個別의 免許를 發行하는 것으로 한다.

州內에 있어서 1을 넘는 一般倉庫를 保有하고 또는 營業하는 一般倉庫業者에 對해 發行하는 一般倉庫免許의 副免許의 副本(副次免許)은 一般倉庫의 各 施設에 揭示하는 것으로 한다. 倉庫業者에 對해 發行하는 一般倉庫 副次免許에 對해 1弗의 免許手數料를 徵收한다.

#### § 24041.5 (店外消費麥酒 및 와인 販賣免許 販賣場의 一部에 對한 店外消費全酒類 販賣免許의 發行)

本法의 規定은 2件의 免許가 相異한 者에 의해 保有되게 되는 경우에는 店外消費麥酒 및 와인販賣免許가 發行되고 있는 販賣場(事業場)의 一部에 있어서 使用하기 위한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를 發行하는 것을 禁止하는 것은 아니다. 但, 當該 免許의 發行은 管理廳이 定하는 規則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 24042 (副次免許의 發行)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 또는 季節的 事業을 위한 同免許의 免許權者로서 免許販賣場(事業場)에 免許販賣場내에 있어서의 消費를 위해 一般客에게 蒸溜酒를 提供하기 위한 固定카운타 또는 씨비스用빠－를 備置하는 1을 超過하는 客室을 保有하고 있는 者는 固定카운타 또는 씨비스用빠－를 備置하고 室内에 免許의 副

本을 揭示하는 各 客室에 對하여 原免許의 副本(副次免許)을 取得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管理廳은 請求에 根據하여 이를 發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의 副次免許申請者는 同一期間의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 또는 季節的 事業을 위한 同免許의 原免許上의 蒸溜酒販賣權에 對해서 支拂되는 免許手數料와 同額의 手數料를 各 副次免許의 申請時에 廳에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副次免許를 取得하지 않는 경우 또는 副次免許의 發行手數料 혹은 更新手數料를 納付하지 않는 경우는 原免許를 取得하지 않거나 그의 更新料를 納付하지 않을 경우에 本法에 根基하여 課해지는 處罪를 받는 것으로 한다. 副次免許는 또한 特定의 顧客專用의 客室에 對해 發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但, 廳은 이 副次免許를 發行하는 경우 副次免許證에 副次免許上의 權利行使의 條件을 裏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副次免許의 申請을 受理했을 경우 廳은 同申請書의 寫本으로부터 作成되는 副次免許申請受理의 通知를 直時 販賣場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保安官 또는 警察署長에게 郵送하는 것으로 한다. 副次免許는 通知의 郵送이 行해진 後 30日이 경과할 때까지의 사이에는 發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0日 以內에 保安官 또는 警察署長으로부터 異議申立을 受理할 경우 廳은 關係되는 郡 또는 市에 있어서 聽聞을 行하고 行政法 第 2卷 第 3部 파트 1 第 5章에 根基하여 實施될 때까지의 사이에는 副次免許를 發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廳은 行政法上付與되는 모든 權限을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真正公開食堂에 對해서 發行하는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 또는 季節的 事業에 對한 同免許의 免許權者는 第 23039條에서 定義하는 公開酒類販賣場인 客室에 對해 免許의 副本(副次免許)를 取得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公開酒類販賣場

에 對해서 發行하는 免許의 免許權者는 真正公開食堂인 客室에 對해 本條에 根據하여 免許의 副本(副次免許)을 取得할 수 있다. 但, 真正公開食堂인 客室에 對해 發行되는 副次免許는 廳이 第 23787條에 의해 義務지워지는 調査 및 判定을 行한 然後에만 發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真正公開食堂인 客室은 第 23039條에서 定義하는 公開酒類販賣場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公開酒類販賣場에만 適用되는 本法의 規定은 이러한 客室에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4043 (列車 및 船舶에 對한 免許)

列車 및 船舶에 對한 免許는 各級 運行單位의 即 免許上의 權利가 行使되는 列車 및 船舶의 免許事業年度間의 平均運行車輛數 또는 船舶數에 根據하여 發行하는 것으로 한다. 平均運行車輛數 또는 船舶數는 管理廳이 定하는 方式에 따라서 確定하는 것으로 한다.

#### § 24044 (建設中의 事業場에 對한 免許)

酒類販賣 小賣免許는 建設을 予定 또는 建設中の 販賣場(事業場)에 對해 發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販賣場(事業場)이 完成할 때 까지의 사이 免許에 根據하여 酒類를 販賣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4045 (暦年基準 및 事業年度基準으로 發行되는 免許)

季節的 事業에 對한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 및 第 24045. 1條에 根基하여 發行되는 期限付 店內消費全酒類 販賣免許를 除外하는 모든 店內消費小賣販賣免許는 暦年基準으로 發行되는 것으로 한다. 但, 免許上의 權利의 行使가 각年の 一定期間에 있어서만 行해지는 경우에는 管理廳은 店內消費麥酒 販賣免許 및 店內消費麥酒, 와인販賣免許를 四半期基準으로 發行하





의해 行하는 것으로 한다. 但, 臨時許可 外에 1件 以上의 小賣免許를 保有하고 當該 免許에 따라 營業을 行하고 있으며 營業을 行하고 있는 各 小賣免許에 關하여 第25509條에 根基하는 支拂遲滯로 되어 있지 않은 臨時許可 保有者는 酒類를 臨時許可에 따라 信用去來에 의해 購入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臨時許可의 保有者が 購入하는 麥酒 또는 와인에 關하는 賣主의 受取手票는 麥酒 또는 와인의 引渡를 받은 날로부터 연결되는 營業 2日 以内에 預金 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提示時 支拂을 받을 수 없는 手票에 의한 支拂은 支拂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臨時許可 保有者로부터 酒類의 賣主 또는 代理人에 의한 提示時 支拂을 받을 수가 없었던 手票의 善意에 의한 取得은 酒類의 賣主에 對한 處分의 事由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臨時許可의 保有者が 申請書를 提出하고 있는 小賣免許의 讓渡는 臨時許可의 保有者が 廳에 對해 모든 流動責務의 支拂이 完了되고 있다는 것 및 酒類의 購入을 위해 發行된 모든 手票는 提示에 의해 支拂된다는 뜻의 宣誓陳述書를 提出할 때까지의 사이 廳은 이에 同意하고 讓渡에 의한 免許를 發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購入者가 臨時免許에 根據하여 營業하고 있는 事實을 賣主가 認識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臨時許可의 保有者와 信用去來를 行하는 것 또는 本條에서 認定되고 있지 않는 方法에 의해 臨時許可 保有者로부터 支拂을 받는 것은 本條 違反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한 免許權者에 對한 處分理由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認識의 有無는 支拂을 받았을 때 또는 信用去來를 行하였을 때에 臨時許可에 根據하여 營業을 行하고 있는 販賣場에 第23985條에 根基하여 義務지워지는 揭示가 걸려 있었느냐 아니냐 臨時許可의 保有者が 第24073條에 根基하여 登錄을 行하고 있는가 아닌가 또는 臨時許可의 保有者가 商法

第6部에 根基하여 登錄을 行하고 公示를 行하였는가 아닌가 等의 證據에 의해 確定하는 것으로 한다. 廳의 臨時許可의 發行 또는 그의 期限의 延長의 拒絕은 第24011條에 根基하는 訴願 또는 第24012條에 根基하는 聽聞의 事由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本章 第2節 및 第3節은 臨時許可에 對해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臨時許可의 申請은 廳이 定하는 樣式의 申請書에 의해 行하는 것으로 한다. 臨時許可의 申請이 取下되거나 또는 廳에 의해 拒絕되었을 경우에는 納付畢手數料는 全額還付 하는 것으로 하며 第23959條 및 第23960條는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臨時許可 發行을 위해 廳에 収納된 手數料는 第25761條에서 規定하는 酒類管理資金에 編入되는 것으로 한다.

#### § 24045. 6 (臨時店內消費 와인販賣 特別免許)

(a) 管理廳은 歲入 및 課稅에 關한 法律 第23701條의 規定 및 1954年 合衆國內國 歲入法 第501條 (a) (3)의 規定에 根基하여 所得稅를 非課稅로 認定받는 非營利團體에 對해 臨時의 店內消費와인販賣 特別免許를 發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免許의 申請者는 申請書의 提出에 添付해서 100弗의 免許手數料를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b) 이 免許는 免許權者가 스스로 購入하거나 또는 寄付를 받는 와인의 販賣만을 認定하는 것이다. 와인은 本法의 規定에서 定해진 最低價格보다 낮은 價格으로 販賣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本法의 他의 規定에 不拘하고 酒類免許權者는 寄付를 酒類의 販賣에 關聯해서 行하지 않을 경우에는 本條에 根基하여 臨時特別免許를 取得한 非營利團體에 와인을 寄付 또는 販賣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c) 이 免許는 1日을 넘지 않는 期間에 對해

發行하는 것으로 한다. 12個月에 1件만의 免許를 發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4045.7 (劇場에 對한 特別免許)

管理廳은 10年以上 存續하고 歲入 및 課稅에 關한 法律 第23701條 및 1954年 合衆國內國歲入法 第501條 (e) (3)의 規定에 根基하여 所得稅를 非課稅로 認定 받는 非營理의 劇場에 대해 店內消費 全酒類販賣 特別免許를 發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는 免許를 所有하는 劇場은 第25631條에 따라 營業開始前 1時間부터 營業終了後 1시간까지의 사이에 入場券의 所持人에 對해 酒類를 販賣하거나 또는 提供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免許申請者는 申請書의 提出에 添付하여 1,000 弗의 原免許發行手數料를 納付하는 것으로 하고 更新時에는 第23320條의 (30)에 規定하는 更新手數料를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의 規定은 1985年 1月까지 効力を 갖는 것으로 하고 同日로서 廢止되는 것으로 한다.

#### § 24045.8 (遺產 等에 包含되는 와인의 販賣)

(a) 管理廳은 臨時特別의 店外消費 와인販賣免許를 ① 第23104.4條의 規定에 따라 免許를 所有하지 않은 者에 對해 瓶入와인의 販賣 또는 競賣를 行하기 위해 遺產 또는 無能力者財產에 關한 遺言執行人, 遺產管理人, 無能力者後見人 또는 保護者 혹은 이들者의 代理人인 競賣人 또한 ② 第23104.5條의 規定에 따라 免許를 所有하지 않은 者에 對해 瓶入와인의 販賣를 行하기 위해 裁判所命令 또는 執行令狀을 執行하기 위하여 裁判所에 의해 任命된 執行人 또는 其他의 者에 對해 發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免許의 申請者는 申請書의 提出에 添付하여 100弗의 免許手數料를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b) 이 免許는 遺產 또는 無能力者의 財產에 包含되어 있는 瓶入와인을 販賣 또는 競賣하는 것을 認定하는 것이다.

(c) 이 免許는 瓶入와인의 販賣 또는 競賣에 要하는 期間 혹은 裁判所 命令 또는 執行令狀이 効力を 가질때까지의 사이에 對해 주어지는 것으로 한다.

(d) 廳은 本條의 規定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判斷하는 規則을 定하는 것으로 한다.

#### § 24046 (免許證의 揭示)

免許證의 發行을 받았을 경우 免許權者는 免許事業場의 보기쉬운 場所에 이를 揭示하는 것으로 한다. 列車, 船舶 또는 航空機에 對해 發行하는 免許證은 그 發行을 받은 이를 列車等에 揭示하는 것에 대신하여 廳이 指定하는 州內의 他場所에 揭示하는 것으로 한다.

#### § 24047 (免許證의 衰失)

免許證이 有効한 期間中에 衰失 또는 損傷되었을 경우에는 管理廳은 5弗50전의 手數料의 納付를 받고 免許證을 再發行하는 것으로 한다.

#### § 24048 (免許의 更新)

臨時免許 또는 第24045.1條에 根基하여 發行되는 期限付店内消費全酒類 販賣免許 以外의 모든 免許는 免許가 取消되지 않고 第24048.1條로부터 第24048.4條의 規定에 따라 更新申請이 行해져 그 手數料가 納付되는 경우에는 更新되는 것으로 한다.

#### § 24048.1 (店内消費 酒類販賣免許의 更新)

曆年基準으로 發行되는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는 다음의 規定에 따라 更新되는 것으로 한

다.

(a) 每年 11月 1日前에 管理廳이 免許事業所 또는 免許權者가 指定하는 場所에 對해 免許權者를 受取人으로 해서 免許更新申請書를 郵送하는 것으로 한다.

(b) 免許更新申請書는 第23320條에서 提示하는 年間 手數料를 納付하고 12月 31日以前까지는 提出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c) 12月 31日以後 2月 15日以前은 免許는 第23320條에서 提示하는 年間 手數料 및 年間 免許手數料 또는 50弗中 적은額을 納付하는 것으로서 更新되는 것으로 한다.

(d) 相異한 期限付로 되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12月 31日에 効力を 갖고 있는 免許는翌年の 2月 15日까지의 사이 繼續하여 効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但, 2月 15日以前에 更新申請書가 提出되지 않고 本條 (b) 또는 (c)의 手數料가 納付되지 않는 경우는 免許는 2月 15日 午前 2時에 自動的으로 取消되는 것으로 하며 이러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限해서만 免許取消의 回復을 認定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2月 15일부터 6個月以内에 申請이 行해질 것

(2) 申請 및 手數料의 納付가 遲滯한 것에 對한 充分한 事由에 關해 廳이 納得 할 證據가 있을 것.

(3) 申請이 廳의 規則에 따르고 있을 것.

免許取消의 回復을 要求하는 申請의 手數料는 年間 免許料外에 本條 (e)에서 規定하는 罰則手數料를 包含하는 것으로 하고 그의 一部還付는 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 2月 5日以前에 廳은 同日까지 免許更新申請書를 提出하지 않았거나 또는 免許更新의 申請을 行하지 않는 内容의 通知를 廳에 行한 각 免許權者에 對해 免許失効의 通知를 郵送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 (a)에 따라 更新申請書를 郵送하지 않는 것 또는 本項에 根基

하는 通知를 行하지 않는 것은 免許權을 繼續시키는 것은 아니다.

(f) 申請書自體가 現實로 執務時間內에 管理廳事務所에 引渡되지 않고 更新手數料가 納付되지 않을 경우 혹은 行政法 第11003條에 따라 提出 또는 送金되지 않을 경우에는 本條에서 規定하는 申請書의 提出이 行해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 § 24048.2 (店內消費 小賣販賣免許의 發行, 讓渡 또는 移轉)

暦年 基準으로 發行되는 店內消費 小賣販賣免許는 當該免許의 發行, 讓渡 또는 移轉前에 當該免許의 更新申請書가 提出되고 更新手數料가 納付되지 않을 경우에는 12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는 發行, 讓渡 또는 移轉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 24048.3 (事業年度 基準으로 發行되는 免許의 更新)

事業年度 基準으로 發行되는 免許는 다음 規定에 의해 更新되는 것으로 한다.

(a) 每年 5月 1日에 管理廳이 免許事業場 또는 免許權者の 指定하는 場所에 免許權者를 受取人으로 해서 免許更新申請書를 送付하는 것으로 한다.

(b) 免許更新申請書는 6月 30日以前에 第23320條에서 提示하는 年間 手數料를 納付하고 提出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c) 6月 30日 後부터 8月 15日까지의 사이는 第23320條에서 提示하는 年間 手數料 및 年間 手數料에相當하는 額 또는 50弗中 적은 額의 罰則手數料를 納付하고 免許의 更新이 되는 것으로 한다.

(d) 相異한 期限이 定해져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免許는 8月 15日까지의 사이 繼續하여 効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但, 8月 15日以前

에 更新申請書가 提出되지 않고 本條 (b) 또는 (c)의 免許手數料가 納付되지 않는 경우는 8月 15日 午前 2時에 自動的으로 取消되는 것으로 하고 取消된 免許는 다음의 경우에 限하여 回復되는 것으로 한다.

(1) 8月 15日 부터 6個月 以內에 申請書가 提出될 것.

(2) 更新申請書가 8月 15日 까지 提出하지 못했고 更新手數料가 納付되지 않았던 理由에 對해 廳이 納得할 수 있는 證據가 提出될 것.

(3) 回復手續이 廳의 規則에 따르고 있을 것.

取消免許 回復申請書에는 年間免許手數料外에 本條 (c)에 規定하는 罰則手數料를 包含하는 것으로 하고 그의 一部는 申請者에게 還付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 8月 5日 까지 廳은 同日 까지 更新申請書를 提出하지 않았거나 更新할 意思가 없다는 内容을 廳에 通知한 免許權者에 對해 免許失効의 通知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 (a)에서 規定하는 更新申請書를 郵送하지 않는 것 또는 本項의 免許失効의 通知를 行하지 않는 것은 免許權을 存續시키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f) 廳事務所에 있어서 執務時間內에 申請書自體가 現實로 引渡되지 않고 更新手數料가 納付되지 않는 경우 行政法 第11003條에 따라 提出 또는 送金되지 않는 경우에는 本條에서 規定하는 更新申請書의 提出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 § 24048. 4 (事業年度 基準의 免許의 發行, 移轉 또는 讓渡)

事業年度 基準으로 發行되는 免許는 免許의 發行 移轉 또는 讓渡前에 當該免許의 更新申請書가 提出되고 年次更新手數料가 納付되지 않을 경우에는 6月 1일 부터 6月 30일의 사이 發行 移轉 또는 讓渡되지 않는 것으로 한

다.

#### § 24049 (稅의 滯納者에 對한 免許讓渡의 拒絕)

管理廳은 申請者가 酒稅法 賣上稅法 個人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 根據하여 課稅되는 稅를 滯納하고 있을 경우 혹은 歲入 및 課稅에 關한 法律 第134條에서 定義하는 無擔保財產에 該當하는 경우에 當該粗稅債務가 酒類免許上의 權利行使로부터 發生하고 있을 때 또는 失業保險法에 根據하는 保險料가 滯納이 되어 있을 경우에 當該保險料債務가 廳에 의해 免許를 付與받은 事業活動으로부터 發生하고 있을 때는 免許의 讓渡를 拒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4049. 5 (店外消費 또는 店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의 差押 및 公賣)

(a) 州公平委員會는 事業의 終了時에 賣上稅를 滯納하고 있는 店外消費 또는 店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權者의 免許를 差押하고 이를 公賣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는 差押 및 公賣를 行하기 위해서는 免許權者가 免許를 管理廳에 返還하고 있거나 年間免許手數料를 滯納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한다. 差押을 行하였을 경우 州公平委員會는 直時 第1級 郵便에 의해 差押의 事實 및 公賣의 意思를 廳 및 免許權者에게 通知하는 것으로 한다. 差押 및 公賣는 歲入 및 課稅에 關한 法律 第2部파트 1의 第6章 第6節 및 本法의 規定에 따라 實施하는 것으로 한다.

(b) 本條의 適用上 「事業의 終了」란 免許權者가 事業의 營業을 中止하고 廳의 免許를 返還하고 있거나 혹은 第24048. 1條 (b) 또는 第24048. 3條 (c)에서 定하는 날까지 年次 免許更新手數料의 納付를 滯納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c) 免許權者는 委員會가 公賣를 行하는 날 또는 取消免許回復最終期日의 둘중 빠른 날까지는 第24048.1條 및 第24048.3條에 根基하는 取消免許回復을 위한 要件에 따라 免許를 되돌려 買入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公賣에 있어서 免許를 購入하는 者는 當該 免許에 對한 免許手數料를 納付하는 것으로서 當該免許를 回復시킬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但, 免許移轉의 効力은 購入者가 本法에서 規定하는 免許讓渡上의 要件을 充足시키고 廳의 承認을 得했을 경우에 限해 發生하는 것으로 한다.

(d) 民事訴訟法 第688條 (f)의 規定은 本法에 根基하는 州公平委員會의 免許差押 및 公賣權限을 制限하는 것으로 解釋해서는 안된다.

#### § 24051(漁船團에 對한 免許)

管理廳은 第23985條 第23986條 第23987條 第23988條 第24013條 第24014條 또는 第2404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漁船團에 對한 店內消費麥酒販賣免許를 發行하고 이를 更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第5節 免許의 移轉(讓渡)

##### § 24070(免許의 人的 또는 場所的 移轉)

各 免許는 各個分離되고 나아가 個別의 인 것이며 管理廳의 承認을 얻어 免許權者로부터 其他의 者에 對해 또는 事業場으로부터 其他的 事業場에 移轉(讓渡)되는 것으로 한다.

(a) 모든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는 다음의 規定에 따라 어떤 郡으로부터 他郡에 移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每年 6月 1일에 어떤 郡에 存在하는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件數는 同日以後의 12個月間에 新規의 25件以上的 同免許의 發行에 의해 增加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어떤 郡에 있어서 12個月間에 發行되는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新規原免許의 件數는 12個月의 起算日인 6月 1일에 當該郡에 있어서 存在하는 同免許件數의 10%以上 增加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2. 管理廳은 第1項에서 規定하는 어떤 郡에 있어서의 12個月間에 發行할 수 있는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新規原免許件數를 算定한 後 第23817條에서 定하는 人口比率에 根據하여 當該12個月間에 當該郡에 있어서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를 追加發行할 수 있는 것이 廳에 의해 確定되었을 경우에는 12個月의 起算日인 6月 1일에 當該郡에 存在하는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件數의 10%를 超過하지 않는 範圍에 있어 當該郡의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移轉을 行하는 것을 認定할 수가 있다. 但 어찌한 경우에 있어서도 當該移轉은 12個月間에 25件을 넘어서는 안된다.

3. 어찌한 경우에 있어서도 12個月內에 어떤 郡에 있어서 發行할 수 있는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新規原免許件數와 同郡에 對해 同期間中에 移轉할 수 있는 同免許件數의 合計件數는 第23817條에서 提示하는 制限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b) 모든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는 다음의 規定에 따라 그의 存在하는 郡에서부터 他의 郡으로 移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每年 6月 1일에 어떤 郡에 存在하는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件數는 12個月間에 同免許의 新規原免許의 發行에 의해 10%를 넘어 增加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하며 어찌한 경우에도 25件을 넘어서 增加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件數는 第23816條의 規定에 의해 制限되는 것으로 한다.

2. 管理廳은 어떤 郡에 있어서 前項에서 規定하는 12個月間에 發行할 수 있는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原免許件數를 算定한 後 第

23816條에서 定하는 人口比率에 根基하여 12個月間에 當該郡에 있어서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를 追加發行할 수 있는 것이 廳에 의해 確定되었을 경우에는 12個月의 起算日인 6月 1日에 當該郡에 當該郡에 存在하는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件數의 10%를 넘지 않는 範圍에 있어 當該郡에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移轉을 認定할 수가 있다. 但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當該移轉은 12個月間에 25件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3.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12個月間에 어떤 郡에 있어서 發行할 수 있는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新規原免許件數와 同郡에 對해 同期間中에 移轉할 수 있는 同免許件數의 合計件數는 第23816條에서 提示하는 制限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c) 1961年 6月 1日以後에 新規原免許로서 發行되는 第23816條 또는 第23817條의 規定에 따르는 小賣免許 및 1967年 8月 17日以後에 他의 郡에 移轉되는 店外消費 및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는 免許權者로부터 他者에게 讓渡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免許權者가 株式會社이면서 免許權者가 California州 또는 New-york市에 있는 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지 않는 株式會社 또는 證券取扱委員會에 定期報告를 行하는 것을 義務지워지지 않는 株式會社의 경우는 第24071條에서 規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免許의 發行日로부터 2年間 免許權者가 發行하는 株式에 對한 權利는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讓渡 또는 擔保로 提供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但 廳이 讓渡가 不當한 困難을 除去하기 위해서 必要하다고 判斷했을 경우를 除外한다.

當한 困難을 除去하기 위해서 必要하다고 判斷했을 경우를 除外한다.

(d) 店外消費 또는 店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로서 本條의 規定에 根基하여 他의 郡에 移轉

되는 것은 1萬弗을 넘는 對價로 販賣하거나 그는 購入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但 이들 免許의 原免許가 1961年 6月 1日 以後에 發行된 것일 경우에는 第24079條에 明示된 것과 같이 6000弗을 넘는 對價로 販賣하거나 또는 購入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e) 本條 (d)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條의 規定에 따라 他의 郡에 移轉된 店外消費 또는 店內消費 全酒類販賣免許는 免許의 郡間移轉이 있었던 날로부터 5年이 經過했을 경우에는 對價에 對한 制限 없이 讓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4070.1 (店內消費 酒類販賣免許의 讓渡)

眞正公開食堂에 對해 發行되는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는 第24070條의 規定에 따라 真正公開食堂 또는 第23039條에서 定義하는 公開酒類販賣場을 위하여 免許權者로부터 他者에 讓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公開酒類販賣場에 對해 發行되는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는 第24070條의 規定에 따라 公開酒類販賣場 또는 真正公開食堂을 위하여 免許權者로부터 他者에 讓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4070.5 (와인釀造者 免許의 讓渡)

와인釀造者가 와인釀造免許에 의해 1年以上의 期間中 現實로 事業活動을 行하지 않을 경우는 新規發行時期에 관계없이 와인釀造免許를 本法 第23013條 및 第23358條에서 定하는 와인釀造者로서의 資格을 갖고 있는 者에 對해서만 讓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4071 (配偶者間의 免許讓渡等 特殊關係者間의 讓渡)

配偶者의 一方의 免許는 移轉申請이 離婚最終判決의 登錄前에 行하여졌을 경우에는 他方配偶者에 對해 移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死亡者, 未成年者, 無能力者, 被保護者, 破産者, 財產受最人 또는 債權者 利益을 위한 受託者가 指名되어 있는 者의 免許는 死亡한 免許權者의 生存파트나 免許權者의 遺產 또는 財產에 關한 遺言執行人, 遺產管理人, 後見人 또는 保護者 혹은 委託者의 同意를 得했을 경우에는 免許權者의 債權者 利益을 위한 受託者에 의해 또는 이들의 者에 對해 讓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免許는 民事訴訟法 第708,630條에서 規定하는 判決確定債務를 위해 指名되는 受託者에 의해 또는 記託者에 對해 讓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免許는 同一의 自然人에게 發行済株式이 所有되고 있는 會社間에 있어서 讓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免許權者는 第24073條에 따라 自己가 모든 株式을 保有하고 있는 會社에 對해 免許權을 讓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以上의 각 免許의 移轉 또는 讓渡手數料는 50弗로 한다. 本條의 規定에 根基하여 免許權者 또는 그의 配偶者에 의해 免許의 讓渡를 받은 株式會社의 免許讓渡의 25%의 株式의 讓渡에 關하여는 株式의 讓渡가 親으로부터 그의 子 또는 孫에게 行해지는 경우를 除外하고 第24072條에서 規定하는 定規의 納付手數料를 納付해야만 하는 것으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輸入免許의 讓渡에는 手數料를 課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本條가 定하는 免許手數料는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編入하는 것으로 한다.

### § 24071. 1(株式 等의 讓渡)

第23405條에 根基하여 株式의 發行 또는 讓渡에 關해 報告를 義務지워져 있는 株式會社의 50% 以上의 株式이 當該株式會社에 免許가 發行되었던 날에 있어서 50% 以上的 株式을 保有하고 있지 않았던 者에게 取得되고 또는 이들의 者에 對해 讓渡되는 경우 當該株式會社의 免許는 새롭게 設立된 會社에 讓渡된

것으로 간주한다. 第234051. 1條에 根基하여 登錄記錄을 保管하는 것을 義務지워져 있는 有限責任파트나 50% 以上의 資本 또는 利益分配持分이 有限責任파트나이면서 免許가 當該有限責任파트나의 無限責任파트나에게 發行되었을 때에 50% 以上的 資本 또는 利益分配持分을 所有하고 있지 않았던 者에 의해 取得되거나 또는 이들의 者에게 讓渡되는 경우 當該有限責任파트나의 無限責任파트나의 免許는 새롭게 設立된 有限責任파트나의 無限責任파트나에게 讓渡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 讓渡의 手數料는 原免許手數料의 50%로 한다. 但 그 最低額은 100弗로 하고 그 最高額은 800弗로 한다. 本條에 根據하여 徵收되는 手數料는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編入하는 것으로 한다. 免許가 讓渡되기 前에 廳은 第23958條에 根基하여 調査를 實施하는 것으로 한다. 株式會社의 50% 以上的 株式을 保有하게 되는 者 또는 有限責任파트나의 50% 以上的 資本 또는 利益分配持分을 保有하게 되는 者는 株式會社 또는 有限責任파트나이 保有하는, 免許를 갖는 者에게 要求되는 모든 資格要件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으로 한다. 株式會社에 의한 本條에 따르는 小賣免許의 讓渡는 廳이 讓渡申請書를 提出하기 前에 讓渡를開始하는 株式會社가 免許가 發行되고 있는 事業場이 存在하는 郡의 登記事務所에 다음의 모든 事項을 記載한 讓渡豫定의 公告를 登記하지 않는 경우에는 認定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a) 株式會社의 名稱 및 所在地
- (b) 株式會社의 50% 以上的 株式을 保有할려고 하는 者의 氏名 및 住所
- (c) 株式의 取得을 위해 支拂되는 對價의 額
- (d) 讓渡를 豫定하는 免許의 種類
- (e) 免許가 發行되고 있는 事業場의 所在地  
讓渡豫定의 公告의 寫本으로 登記官의 證明을

받은 것을 讓渡申請書에 添付하여 廳에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本法의 他規定에 不拘하고 本條에 根基하여 讓渡에 의해 새롭게 設立되었는 것으로 認定되는 株式會社는 새롭게 設立되었는 것으로 認定되기 以前에 會社가 안고 있었던 未拂債務를 辨濟할때까지 第25509條에서 規定하는 酒類供給者 또는 製造者와 新規의 信用去來를 行하는 資格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하고 小賣免許權者인 株式會社는 本條에 根基하여 免許를 讓渡하는 것에 의해 42日 또는 30日의 支拂期間 未拂債務에 對한 金利 또는 引渡時에 있어서의 支拂原則 等에 關하는 第25509條의 規定의 適用을 回避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 24072(讓渡移轉 手數料)

管理廳은 다음의 讓渡移轉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a) 小賣販賣免許以外의 免許 讓渡手數料는 第24071條에서 規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年間免許手數料의 70%, 第23322條는 이 讓渡手數料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b) 小賣販賣免許의 手數料는 原免許手數料의 50% (但 1,250弗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또는 原免許手數料의 規定이 없을 경우는 100弗.

(c) 第24082條에서 定하는 경우를 除外하고 免許事業場의 移轉은 100弗.

(d) 本條의 他手數料 規定에 不拘하고 郡間의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移轉手數料는 3,000弗.

(e) 免許權者의 父母 또는 子女에 對한 讓渡에서 讓渡에 對해 對價가 支拂되지 않을 경우는 本條에서 規定하는 正規讓渡手數料의  $\frac{1}{2}$ .

本條에서 規定하는 手數料의 徵收類는 모두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編入하는 것으로 한다.

#### § 24072. 1(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의 事業場의 移轉)

眞正 公開食堂에 對한 店內消費酒類 販賣免許가 發行되고 있는 事業場으로부터 他 事業場에 第24072條에 따라 真正公開食堂 또는 第23079條에서 定義하는 公開酒類販賣場을 營業하기 위하여 移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公開酒類販賣場에 對한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는 免許가 發行되어 있는 事業場으로부터 他 事業場에 第24072條에 따라 公開酒類販賣場 또는 真正 公開食堂을 營業하기 위해 移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4072. 2(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間의 交換)

眞正公開食堂에 對해서 發行되는 店內消費酒類販賣免許의 保有者は 第23039條에서 定義하는 公開酒類販賣場을 위한 類似免許와 自己의 免許를 交換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公開酒類販賣場에 對해서 發行되는 同免許를 保有하는 者는 真正公開食堂에 對한 類似免許와 自己의 免許를 交換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免許의 交換은 交換이 要求되는 免許의 更新時에 更新期間中 1回의 限渡로 廳의 承認을 得하여 100弗의 交換手數料를 納付하고 나아가 原免許發行에 關한 本法上의 規定을 遵守하여 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서 規定하는 手數料의 徵收額은 全額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編入하는 것으로 한다.

#### § 24072. 5(店內消費全酒類販賣特別免許의 交換)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保有者は 自己의 免許를 同免許의 特別免許와 交換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店內消費全酒類販賣特別免許의 保有者は 自己의 免許를 同一般免許와 交換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交換은 廳의 承認을 得하여 100弗의 交換手數料를 納付하고 原免許

의 發行에 關한 本法의 規定을 遵守해서 行하는 것으로 한다. 但, 第23985條 및 第23986條의 規定은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와 同特別免許의 交換에는 適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本條에 根基하여 徵收되는 手數料는 全額 州財務省의 一般資金에 編入되는 것으로 한다.

#### § 24073 ((小賣酒類販賣免許讓渡豫定公告의 登錄)

發行件數가 制限되어 있는 小賣販賣免許 店外消費 및 店內消費麥酒 및 와인販賣免許 店內消費麥酒販賣公開酒類販賣場免許 또는 季節的 事業에 對한 店內消費全酒類販賣免許는 廳에 申請書를 提出하기 前에 免許가 發行되고 있는 事業場이 存在하는 郡의 登記事務所에 있어서 免許權者 또는 讓受를豫定하는 者가 다음의 모든 事項을 記載한 公告를 登記하지 않으면 謂渡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a) 免許權者의 氏名 및 住所
- (b) 讓受豫定者의 氏名 및 住所
- (c) 謂渡를豫定하는 免許의 種類
- (d) 免許가 發行되고 있는 事業場의 所在地
- (e) 營業의 謂渡 및 免許讓渡의 對價가 定해져 있는 경우에는 對價를 謂渡를 廳으로부터 承認 받은 後에 支拂한다는 内容의 當事者間의 合意
- (f) 營業 및 免許의 謂渡에 對한 對價의 支拂場所, 對價額 및 現金, 手票, 어음, 有形 또는 無形財產 및 이들 金額의 指定 等 全對價의 内容
- (g) 第24074條에서 規定하는 條件付讓渡捺印證書의 保管者, 또는 第24074.4條에서 規定하는 保證人의 氏名 및 住所.

郡登記官의 證明을 받은 謂渡豫定의 公告寫本을 謂渡申請書에 添付하여 廳에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 § 24074 (條件付讓渡捺印證書)

讓渡申請書를 廳에 提出하기 前에 豫定하는 營業 또는 免許의 謂渡가 對價의 支拂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免許權者 및 讓受豫定者는 條件付讓渡捺印證書의 保管者가 되는 謂渡當事者以外의 者와의 사이에서 條件付讓渡捺印證書를 作成하는 것으로 하고 謂渡豫定者는 條件付讓渡捺印證書保管者에게 對價의 全額을 預託하는 것으로 한다. 謂渡申請書에는 全對價의 内容을 記載하는 것으로 하며 現金, 手票, 어음, 有形 또는 無形財產 그리고 이들 金額의 指定 等을 包含시키는 것으로 한다. 免許權者 및 讓受豫定者는 條件付讓渡捺印證書保管者에 對해 第24049條에서 規定하는 謂渡要件이 充足된 後에 保管者가 廳으로부터 免許讓渡承認의 通知를 받기 前에 保管者에게 自己의 債權을 通知한 免許權者の 真正한 債權者의 請求에 對해 謂渡對價에서 辨濟를 한다는 것, 그리고 對價가 全債務의 辨濟에 不足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對價를 配分할 것을 指示한다는 뜻의 合意書를 作成하여 이를 保管者에게 預託하는 것으로 한다.

第1, 所得稅 또는 源泉徵收稅에 根基하는 合衆國의 請求權 및 이들後에 第24049條에서 規定하는 것 以外의 諸稅에 根基하는 請求權.

第2, 謂渡 또는 條件付讓渡捺印證書를 公開하기 前에 發生한 謂渡人의 被用者 貨金, 紿與 또는 付帶給與 請求權.

第3, 擔保物件의 賣却對價의 範圍에서의 擔保付債權者의 請求權 및 期限이 到來하고 있는 地代의 範圍에서의 地主의 請求權

第4, 職業人 先取持權付의 請求權

第5. 條件付讓渡捺印證書作成 等에 關하는 手數料一般的 仲介手數料 및 合理的인 範圍의 壯護士報酬

第6. 免許販賣場에서 再販賣하기 위하여 購入한 商品의 對價請求權 및 免許事業의 營業

에 關하여 提供, 實施 또는 供給되어진 役務  
에 對한 請求權

#### 第 7. 其他의 請求權

上記의 請求權에 對한 支拂은 充分한 支拂  
資產이 없을 경우에는 比例配分되는 것으로 한  
다. 讓渡人인 免許權者가 請求權으로 鬭爭하  
는 경우에는 條件付證書 保管者는 請求者에게  
通知하여 그 金額 또는 比例配分額을 25日間  
保管하는 것으로 한다. 殘額은 讓渡人 免許權  
者에게 支拂되는 것으로 한다. 合意書에 있어  
서는 또한 條件付證書 保管者가 免許讓渡完了  
後 合理的 期間內에 支拂 또는 配分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 § 24074. 1(條件付讓渡捺印證書의 保管者)

第24074條에 根基하는 條件付讓渡捺印證書  
의 保管者로서 行爲하는 것을 願하는 者는

1. 財政法 第 6 部 第 1 章의 適用 規定을 遵  
守하는 것으로 하고

2. 債權者로부터의 請求를 受理한 後 10日  
以內에 請求權受理의 通知를 行하는 것으로 하  
며,

3. 免許가 譲渡된 後 10日以內에 그리고 自  
己가 保管하는 譲渡對價의 配分을 行하기 前  
에 請求를 行한 債權者에 對해서 譲渡對價가  
모든 債權者에게 全額 辨濟되느냐 안되느냐를  
通知하는 것으로 한다. 譲渡對價가 모든 債權  
者에게 全額 辨濟될 수 있는 경우는 各債權者  
에 對해 辨濟를 行하는 期限을 通知하는 것으  
로 한다. 또한 譲渡對價가 모든 債權者에게  
全額 辨濟하는데는不足할 경우는 請求를 行한  
各債權者에게 다음의 事項을 通知하는 것으로  
한다.

(a) 譲渡對價로서 保管되어 있는 것의 見積  
金額 및 그의 内容

(b) 請求를 行하고 있는 債權者의 氏名 및 債  
權金額

(c) 各債權者에게 辨濟를豫定하고 있는 金  
額

(d) 債權者에의 辨濟의 期限

#### § 240 74.2(件付讓渡捺印證書 保管者의 保管資產의 交換)

第24074條에 根基하는 條件付讓渡捺印 證書  
의 保管者로서 行爲하는 것을 願하는 者는 譲  
渡對價로 保管하는 資產을 約束어음과의 引換  
에 있어 引渡되어지는 資產보다도 低額의 對  
價로 交換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4074. 3(條件付讓渡捺印證書 保管者에게 對價를 預託했다는 뜻의 陳述書)

(a) 第24073條에서 規定하는 免許讓渡申請書  
의 提出後 30日以內에 譲渡豫定者는 第24074  
條에 의해 義務지워져 있는 合意書에서 明示하  
는 免許購入代金 또는 對價를 條件付讓渡證書  
保有者에게 預託했다는 内容의 宣誓陳述書를  
廳에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陳述書를 廳에  
提出할 때는 그 寫本을 免許讓渡入 및 條件付  
讓渡捺印證書 保管者에게 送付하는 것으로 한  
다. 本條에서 規定하는 30日間의 期間은 充分  
한 理由가 있을 경우는 廳이 延長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但, 免許는 本條에 의해 義務지  
워진 陳述書가 廳에 의해 受理될 때까지는 譲  
渡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b) 本條는 第24074.4條에 따라 譲渡對價의  
支拂保證書가 提出되고 있을 경우에는 適用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4074. 4(保證會社에 의한 辨濟의 保證)

(a) 第2407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保證會社  
가 廳에 對해 免許權者가 債權者의 請求를 全  
額 그리고 지체없이 나아가 誠實하게 辨濟한  
다는 뜻의 保證書를 提出하고 追加하여 保證  
을 行하는 것을 債權者가 받았을 경우는

營業 또는 免許의 讓渡에 關해 條件付讓渡捺印證書의 作成은 業務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空은 保證會社가 모든 債權者의 請求를 全額 辨濟하고 空에 對해 免許讓渡를 위한 모든 條件이 充足되었다는 뜻의 宣誓陳述書를 提出할 때까지는 免許를 讓渡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保證會社에 의한 辨濟는 合衆國通貨 또는 債權者가 認定하는 樣式의 保證手票에 의해 行해지는 것으로 한다.

(b) 本條는 店外消費麥酒 및 와인販賣免許의 讓渡에 關係되는 경우로서 保證會社가 連結べき 이스로 最新의 監查畢財務諸表上 500萬弗以上의 純資產을 保有하고 있을 경우에 限해서만 通用하는 것으로 한다.

#### § 24075(免許讓渡豫定 公告의 登錄 및 條件付讓渡捺印證書 作成業務의 通用除外)

第24073條 및 第24074條의 規定은 遺言執行人, 遺產管理人, 後見人, 保護者 信託受託者, 財產受取人(民事訴訟法 第780, 630條의 規定에 根基하는 受取人을 例外함) 혹은 公務上의 法定義務履行 또는 法律上 課해진 信託上의義務履行을 위해 行爲하고 있는 其他의 者가 行하는 免許讓渡 債權者의 利益을 위해 行하여지는 讓渡 또는 第24071條에서 規定하는 生存配偶者 受託者 또는 其他의 者에 對해 適用되지 않는다.

#### § 24076(債務履行을 위한 免許擔保契約의 禁止)

免許權者는 貸付金의 擔保 또는 契約履行의 擔保로서 免許를 讓渡한다는 趣旨의 契約을 締結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請渡申請書가 提出된 날로부터 90日以前에 締結된 貸付의 辨濟 또는 契約의 履行을 위해 또는 特定의 權利者에게 利益을 提供하기 위한(第24074條에서 規定하는 경우를 例外함) 免許의 讓渡

혹은 讓渡人이 債權者에 對해 詐害行爲를 하거나 損害를 끼치게 하는 免許讓渡는 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 § 24077(人口 3萬5千人以下의 郡에의 免許移轉의 禁止)

法律上의 他規定에 관계없이 人口 3萬5千人以下의 郡에 免許를 移轉시켜서는 안된다.

#### § 24078(店內消費全酒類販賣特別免許의 讓渡 또는 移轉上의 制限)

店內消費全酒類販賣特別免許는 本節의 規定에 의해 讓渡 또는 移轉할 수 있는 것이지만 第23399.2條에 있어서 義務지워지는 免許施設의 經營을 위해서만 讓渡 또는 移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24079(讓渡價格의 制限)

1961年 6月 1日以後 發行되는 店內消費 또는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의 購入 또는 謂渡價格은 6,000弗을 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但, 이들 免許의 原免許가 發行된後 5年을 經過했을 경우는 購入 또는 謂渡價格에 對한 制限은 設定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4080(讓渡對價內容의 記載)

讓受豫定者가 店內消費 또는 店外消費 全酒類販賣免許의 讓受에 關해 空에 提出하는 申請書에는 謂渡人에게 支拂되는 對價에 다음의 것에 對한 對價를 包含시키는가 아닌가를 記載하는 것으로 한다.

- (a) 在庫品
- (b) 備品
- (c) 免許讓渡

(a), (b) 및 (c)에 對해 支拂되는 對價가 있을 경우는 그 額數를 正確하게 申請書에 記載하는 것으로 한다.

§ 24081(被災免許權者 의 營業 繼續)

(a) 免許의 發行 讓渡 또는 移轉의 要件에 關한(但, 이들에게 限定되지 않는다) 本法上의 他規定에 不拘하고 店外消費全酒類販賣免許以外의 免許가 發行되고 있는 事業場이 火災 또는 天災, 혹은 免許權者的 管理를 넘는 他의 힘에 의해 破壞된 免許權者は 60日을 넘지 않는 期間 免許가 發行되고 있었던 事業場으로부터 500feet의 範圍内에 있어서 事業場이 修理 또는 再建될 때까지 營業을 繼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事業場이 修理 또는 再建되었을 경우는 元事業場에 있어서 現 免許에 根基하여 營業을 繼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4082(被災事業場의 移轉)

免許事業場이 火災 또는 天災의 結果로 破壞되거나 또는 土地收用權에 根據하여 收用當한 免許權者の 免許는 移轉手數料를 納付하지 않고 同一郡内에 있어서 移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破壞된 事業場이 再建되고 免許가 第3者에게 讓渡되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火災 또는 天災가 있었던 날로부터 6個月以内에 移轉手數料를 納付하지 않고 破壞된 事業場이 存在하고 있었던 場所에 復歸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